

서울특별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5. 6. 16.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874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5. 5. 23.
4. 회부일자 : 2025. 5. 29.

II.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하여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III. 주요내용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단위: 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①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⑤=①+②
		소계②=③-④	조성액③	사용액④	
합 계	1,825,880,385,953	△403,880,211,617	72,088,249,482	475,968,461,099	1,422,000,174,336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140,160,984,180	△25,535,004,720	2,123,386,380	27,658,391,100	114,625,979,46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 개선기금	1,016,104,565,756	△70,142,605,620	36,158,956,270	106,301,561,890	945,961,960,136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419,670,410	31,064,750	31,064,750	0	450,735,160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 안정화기금	665,663,024,730	△308,223,042,300	21,776,957,700	330,000,000,000	357,439,982,430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3,532,140,877	△10,623,727	11,997,884,382	12,008,508,109	3,521,517,150

Ⅳ.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박광선)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5개 기금의 2024회계연도말 총 조성액은 1조 4,220억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조 8,258억 8천만원 대비 22.12%, 4,038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음.
- 2024회계연도말 기준 조성액을 기금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의 2024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146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1,401억 6천 1백만원) 대비 18.22%, 255억 3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4회계연도말 조성

액은 9,459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1조 161억 5백만원) 대비 6.9%, 701억 4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의 2024회계연도말 조성액은 4억 5천 1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4억 2천만원) 대비 7.4%, 3천 1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2024회계연도말 조성액은 3,574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6,656억 6천 3백만원) 대비 46.3%, 3,082억 2천 3백만원 감소하였음.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의 2024회계연도말 조성액은 35억 2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35억 3천 2백만원) 대비 0.3%, 1천만원 감소하였음.

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

가. 주요내용

[표-1] 기금 내역

(단위: 백만원, %)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증감률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140,161	△25,535	2,123	27,568	114,626	△18.22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기금’의 2024회계연도말 조성액은 1,146억 2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1,401억 6천 1백만원) 대비 18.22%, 255억 3천 5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검토의견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추진 중인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2016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임.
- 2024회계연도 동 기금의 수입결산에 따른 수납액은 이자수입 21억 2천 3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66억 9천 7백만원, 예치금 회수 1,334억 6천 4백만원으로, 기금 지출액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건설비에 276억 5천 8백만원, 예치금 715억 7백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31억 1천 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수입결산

- 2024회계연도 동 기금의 수납액(결산액)은 1,422억 8천 4백만원으로 수입계획액 1,422억 8천 6백만원의 99.9% 수준임.

[표-2] 2024회계연도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운용계획(A)	결산액(B)	증 감(A-B)	증감사유
소계	135,588	142,284	6,695	
이자수입	2,125	2,123	△2	
전년도이월금	0	6,697	6,697	
예치금회수	133,464	133,464	0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0	0	0	

1) 2024년 2월 제322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동 기금의 설치 근거인 조례가 개정되어 조례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기금명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 기금'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변경되었음.

- 동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당초 수입계획(954억 2천 2백만원) 대비 42.1% 증가한(401억 6천 6백만원) 1,355억 8천 8백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결산 결과 수납액은 수정된 수입계획액 대비 4.9% 증가(66억 9천 6백만원)한 1,422억 8천 4백만원임.
- 동 기금의 수입계획액이 당초 계획보다 증액 수정된 것은 2023년도 기금결산과 연도말 이자수입 반영 등에 의해 예치금 회수 금액과 이월금이 증가함에 따른 것임.
- 관련하여 동 기금은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2024.6.25.)에서 예치금 회수 금액 변경 등에 따른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을 승인받은 바 있고,²⁾ 연도말 이자수입 증가 역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11조에³⁾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기재⁴⁾를 통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것임.
- 또한, 수정된 수입계획액 대비 수납액 차이는 121만 3,620원으로 수정된 수입계획액 대비 0.06%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수입결산 상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950호, 2024.5.27.제출, 교육감 제출)

3)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의 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415쪽 참고

○ 변경 일자: (1차) 2024.5.24., (2차) 2024.10.14., (3차) 2024.12.24.

○ 변경의 필요성(사유)

- (1차)공정률 상승에 따른 건립공사 촉진을 위한 지출계획 증액,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
- (2차)공사 일정에 따른 유형자산(조리실 급식기구 구입비) 편성 및 예치금 조정
- (3차)연도말 이자수입 반영 및 예치금 조정

○ 변경 요지

- (1차)예치금회수 39,995,042천원 증액, 건설비 24,801,300천원 및 예치금 15,193,742천원 증액
- (2차)기관운영 유형자산(조리실 급식기구 구입비) 490,000천원 증액 및 예치금 490,000천원 감액
- (3차)이자수입(170,792천원) 증액에 따른 예치금 170,792천원 증액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의 이자수입의 수납액 감소에 대하여 예치금 관리를 위해 개설한 정기예금을 만기 도래 이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재이체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이는 금고 약정상 만기가 경과 하더라도 해지 시까지 최초 약정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금고 약정서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금리」 누적 변동률이 $\pm 3\%$ 이하일 경우⁵⁾ 만기 경과 후에도 해지 시까지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이에 현재 동 기금의 예치금 관리를 위해 설정된 정기예금 10개 중 만기일이 도래한 9개 계좌 전체가 해제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음.

[표-3] 2024회계연도 말 기준 기금 정기예금 예치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종류	예치일	만기일	만기여부	이율(%)	예치액
1	보통예금(입출전용)	2016-10-12		해당없음	0.90	0
2	MMT(수시입출금)	2024-02-16		해당없음	3.10	457,810
3	정기예금	2022-12-14	2024-01-31	○	3.67	19,200,000
4		2023-01-12	2023-04-12	○	4.00	10,108,882
5		2023-01-12	2023-04-12	○	4.00	20,912,700
6		2023-01-12	2023-04-12	○	4.00	11,200,000
7		2023-02-10	2023-05-10	○	4.00	5,300,000
8		2023-02-10	2023-05-10	○	4.00	1,700,000
9		2023-03-02	2023-06-02	○	4.00	10,000,000
10		2023-04-17	2024-04-17	○	3.38	15,427,445
11		2024-03-08	2024-09-08	○	3.67	15,700,000
12		2024-07-05	2025-07-05		3.38	4,619,142
합계						114,625,979

5) 금고의 이율 변경은 금고 약정서에 따라 매월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 기준 정기예금 금리」의 누적 변동률이 $\pm 3\%$ 이상일 경우, 동 변동률만큼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다음달 10일부터 적용됨.

-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대내외적 경제 여건 변화로 금융시장의 변화가 큰 상황임을⁶⁾ 참작하여 이자 수입이 최대한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기금 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이체 중인 정기예금에 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됨.

3) 지출결산

- 2023회계연도 동 기금의 지출액(결산액)은 991억 6천 5백만원으로 지출계획액 1,422억 8천 6백만원 대비 431억 2천만원 감소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431억 1천 9백만원이 발생함.
- 지출계획액과 지출액 간의 이러한 차이는 신청사 건립 예산이 지출계획 현액 737억 8천 9백만원 대비 37.48% 수준인 276억 5천 8백만원만 집행되고, 431억 1천 9백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임.

[표-4] 2024회계연도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운용계획(A)	결산액(B)	다음연도 이월액	증 감 (A-B)	비고
소계	142,286	99,165	43,119	43,120	
기관운영 (신청사건립)	73,789	27,658	43,119	46,130	운용계획 상 전년도 이월액 6,697백만원 포함
재무활동 (예치금)	68,497	71,507	-	△3,010	

- 동 기금의 지출계획액은 당초 지출계획(954억 2천 2백만원) 대비 42.1% 증가한(401억 6천 6백만원) 1,355억 8천 8백만원으로 수정되었으며, 결산 결과 지출액은 수정된 지출계획액 대비 3.9%, 37억

6)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 경제의 대외적 여건에 대하여 미-중 무역갈등 완화 속에서도 연초보다 높은 수준의 미국 관세 및 협상 과정의 불확실성 등이 상존하고, 이에 따라 세계 교역과 중국, 유로지역 등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밝힘. 대내여건 역시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추경편성 속에서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진단함. 특히, 향후 성장 경로에 있어 “무역협상 전개양상, 경제심리 회복속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진단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2025.5.), 경제전망보고서(2025년 5월))

4천 3백만원이 증가한 991억 6천 5백만원임.

- 이처럼 당초 지출계획액이 증액 수정된 것은 건립공사 촉진을 위해 건설비 248억원과 조리실 급식기구 구입비 4억 9천만원 등이 증액되고, 2023년 결산 결과에 따른 전년도 이월액과 예치금이 반영됨에 따른 것임.
- 관련하여 동 기금은 제32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2024.6.25.)에서 기금 운용 계획의 변경을 승인받은 바 있고,⁷⁾ 조리실 급식기구 구입비 증액 등은 역시 「지방기금법」 제11조에⁸⁾ 따라 기금결산보고서 기재⁹⁾를 통해 적정한 절차를 거쳐 변경된 것임.
-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기금의 기관운영(신청사건립) 지출계획액을 대폭 증액하였음에도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했다는 측면에서¹⁰⁾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예산 사정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노정(露呈)했음.

7) 2024년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건립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1950호, 2024.5.27.제출, 교육감 제출)

8)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9)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415쪽 참고

○ 변경 일자: (1차) 2024.5.24., (2차) 2024.10.14., (3차) 2024.12.24.

○ 변경의 필요성(사유)

- (1차)공정률 상승에 따른 건립공사 촉진을 위한 지출계획 증액,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

- (2차)공사 일정에 따른 유형자산(조리실 급식기구 구입비) 편성 및 예치금 조정

- (3차)연도말 이자수입 반영 및 예치금 조정

○ 변경 요지

- (1차)예치금회수 39,995,042천원 증액, 건설비 24,801,300천원 및 예치금 15,193,742천원 증액

- (2차)기관운영 유형자산(조리실 급식기구 구입비) 490,000천원 증액 및 예치금 490,000천원 감액

- (3차)이자수입(170,792천원) 증액에 따른 예치금 170,792천원 증액

10)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신청사건립 사업에 418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전년도이월액 66억 9천 7백만원을 포함하여 252억 9천 1백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지출계획액으로 670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실제 2024년 해당 사업의 지출액은 276억 5천 8백만원에 불과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431억 1천 9백만원이었음.

[표-5] 2024년 '기관운영(신청사 건립 사업비)' 지출 내역¹¹⁾

(단위: 천원)

항목	지출계획 금액 (A)	전년도 이월액 (B)	지출계획 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집행잔액 (F=C-D-E)
설계비	0	0	0	0	0	0
시설비	64,663,141	5,817,258	70,480,399	26,700,006	41,188,185	2,592,208
감리비	1,770,000	880,224	2,650,224	880,224	1,651,140	118,860
부대비	168,152	0	168,152	78,161	24,632	65,359
급식기구	490,000	0	490,000	0	255,315	234,685
합계	67,091,293	6,697,482	73,788,775	27,658,391	43,119,272	3,011,112

- 우선, 금번과 같은 대규모의 이월액 발생은 「지방기금법」 제12조
에¹²⁾ 따른 지출사업 이월 금지 원칙을 저해하는 것인바, 서울시교육청
은 기금 운용에 있어 이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더욱이 동 기금의 이월액 발생은 2022회계연도 17억 7천 6백만원,
2023회계연도 66억 9천 7백만원 등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시적이라기보다 기금 운용 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이월액 발생의 문제가 집행계획 대비 낮은 집행액에서 기인하
고, 이월액은 궁극적으로 사업계획보다 예산집행 속도가 더디다는 점
을 의미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사업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이 역시 앞서 살펴본 이월액 발생과 마찬가지로 매년 정례적으로 동
일한 현상을 보여왔는바, 신청사 건립 사업 전반에 있어 일정을 포함
한 사업관리 전반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11) (청사이전추진단) 시의원(박상혁의원) 요구자료(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현황) 제출(1152번) (서울시교육청 청사이전 추진단-2814, 2025.5.30.)

1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지출사업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고 판단됨.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신청사 건립 추진 전반에서 기금 운용계획에 맞춰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지출액 변동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임.

3.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가. 주요내용

[표-6] 기금 내역

(단위: 백만원, %)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증감률
	계 (B=C-D)	조성액(C)	사용액(D)		
1,016,105	△70,143	36,159	106,302	945,962	△6.90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2024회계연도말 조성액은 9,459억 6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조 161억 5백만원 대비 6.9%, 701억 4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나. 검토의견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법정기금으로,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교육시설 개축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교육시설 개선 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2024회계연도 동 기금의 수납액은 이자수입 361억 5천 9백만원, 예치금회수 1조 161억 5백만원이고, 동 기금의 지출액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1백만원, 민간투자사업상환 1,063억원, 예치금 9,459억 6천 2백만원임.

2) 수입결산

- 2024회계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수납액은 1조 522억 6천 4백만원이며, 수입계획액(1조 522억 6천 4백만원) 대비 수납액의 차이가 1천원 미만임.
- 동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당초 수입계획(1조 2,679억 1천 2백만원) 대비 17.01% 감소한(2,156억 4천 8백만원) 1조 522억 6천 4백만원인바, 이는 2023년도 기금 결산 등에 따른 사유로 수정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 결산보고서에 적시¹³⁾되어있어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표-7] 수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운용계획(A)	결산액(B)	증감(A-B)	증감사유
소계	1,052,264	1,052,264	0	974원 차이
이자수입	36,159	36,159	0	730원 차이
예치금회수	1,016,105	1,016,105	0	244원 차이

13)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415쪽 참고

- 변경 일자: (1차) 2024.5.24., (2차) 2024.10.14., (3차) 2024.12.24.
- 변경의 필요성(사유)
 - (1차)공정률 상승에 따른 건립공사 촉진을 위한 지출계획 증액,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
 - (2차)공사 일정에 따른 유형자산(조리실 급식기구 구입비) 편성 및 예치금 조정
 - (3차)연도말 이자수입 반영 및 예치금 조정
- 변경 요지
 - (1차)예치금회수 39,995,042천원 증액, 건설비 24,801,300천원 및 예치금 15,193,742천원 증액
 - (2차)기관운영 유형자산(조리실 급식기구 구입비) 490,000천원 증액 및 예치금 490,000천원 감액
 - (3차)이자수입(170,792천원) 증액에 따른 예치금 170,792천원 증액

3) 지출결산

- 2024회계연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지출액은 1조 522억 6천 4백만원으로 지출계획과 지출액(결산액)의 차이가 1천원 미만으로 결산상 별도 문제는 없음.
- 동 기금의 지출계획액은 당초 지출계획(1조 2,679억 1천 2백만원) 대비 17.01% 감소한(2,156억 4천 8백만원) 1조 522억 6천 4백만원으로, 2023년 결산과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예치금 및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증감 등을 반영하고자 변경되었음.
- 동 기금은 당초 사업비(민간투자사업상환)의 지출계획액에서 BTL 원금 5억원이 증액되고, BTL 이자 5억원이 감액되었음.
- 이 역시 2023년도 기금결산 등에 따른 사유로 수정된 것으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금 결산보고서에 적시¹⁴⁾되어있고, 사업비 변동 역시 정책사업 내에서 이뤄진 것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표-8] 지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운용계획(A)	결산액(B)	증감 (A-B)	증감사유
소계	1,052,264	1,052,264	0	974원 차이
위원회운영	3	1	2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잔액
민간투자사업상환	107,265	106,300	965	BTL 원금 등 지급잔액
예치금	944,995	945,962	△967	

1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415쪽 참고

- 변경 일자: (1차) 2024.5.24., (2차) 2024.10.14., (3차) 2024.12.24.
- 변경의 필요성(사유)
 - (1차)공정률 상승에 따른 건립공사 촉진을 위한 지출계획 증액, 전년도 결산 결과 반영
 - (2차)공사 일정에 따른 유형자산(조리실 급식기구 구입비) 편성 및 예치금 조정
 - (3차)연도말 이자수입 반영 및 예치금 조정
- 변경 요지
 - (1차)예치금회수 39,995,042천원 증액, 건설비 24,801,300천원 및 예치금 15,193,742천원 증액
 - (2차)기관운영 유형자산(조리실 급식기구 구입비) 490,000천원 증액 및 예치금 490,000천원 감액
 - (3차)이자수입(170,792천원) 증액에 따른 예치금 170,792천원 증액

- 동 기금 지출계획의 세부사업 중 ‘민간투자사업상환’은 지출계획 현액 1,072억 6천 5백만원에서 1,063억원이 지출되어 지출계획 현액 대비 99.1%가 지출되었음.
- 해당 사업은 서울시교육청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으로 시행한 관내 141개교의 교사동과 체육관 등 학교 시설 신·개축 사업으로 인하여 매년 지출되는 임대료의 원금과 이자, 운영비를 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¹⁵⁾
 - 여기서 임대료(원금 및 이자), 운영비는 개별 사업시행자와 사전에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서에 의해 결정되고,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이 설정된 20년 동안 나눠 지급되며, 5년마다 물가 변동, 금리변화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가 조정됨.
- 그러므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지출계획과 결산액의 차이는 실시협약서에 따른 BTL 임대료 및 운영비 조정 등이 예측(지출계획)에 비해 적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지출결산 상 별도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됨.
- 동 사업은 2022년 8월 서울시의회에서 심의·의결된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¹⁶⁾ 심사 당시 편성된 BTL사업비 7,470억원을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별도 문제는 없음.
- 한편 동 기금 지출계획의 세부사업 중 ‘위원회운영’은 동 기금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으로 전체 지출계획에서 편성된 금액은 적으나 매년 운용계획 대비 집행율이 저조한바, 향후 지출계획 수립시 이를 고려하여야 할 것임.

15)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1158번)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6159, 2025.6.2.)

16) 2022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안번호 제32호, 2022.7.13. 제출, 교육감 제출)

[표-9] '위원회 운영' 불용률

(단위: 천원)

구 분	운용계획(A)	결산액(B)	집행률(B/A)
2024	3,000	1,360	45.3%
2023	2,400	720	30.0%
2022	2,400	560	23.3%

[표-10] 2024회계연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내역¹⁷⁾

구분	심의일자	주요안건	심의결과
1차	2024.3.15.	- 2023년도 결산	원안 가결
2차	2024.5.23.	- 2024년도 운용 계획 1차 변경	원안 가결
3차	2024.7.8.	- 2023년도 성과분석 보고	원안 가결
4차	2024.10.23.	- 2024년도 운용 계획 2차 변경 - 2025년도 운용 계획	원안 가결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금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2025년부터 상환 예정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관련 BTL의 원금과 이자, 운영비 지급에 관한 예산을 20억 5천 2백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음.¹⁸⁾

- 즉, 서울시교육청이 BTL 방식으로 추진하는 학교 시설의 임대료와 운영비가 사업 유형과 시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에 분리하여 편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표-11] '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중) BTL 임대료 및 운영비 편성 현황¹⁹⁾

· 상환지출		1,707,568	천원
- BTL원금	1,197,307,000원×1식	= 1,197,307	천원
- BTL이자	510,261,000원×1식	= 510,261	천원
· 운영비		344,507	천원
- BTL임시사용운영비	(△40,000,000원×1분기)+(40,000,000원×2분기)	= 40,000	천원
- BTL운영비	(87,922,500원×2분기)+(64,331,000원×2분기)	= 304,507	천원

17) 시의원(박상혁 의원) 요구자료 제출(1158번)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안전과-6159, 2025.6.2.)

18) 2025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설명자료, 1041-1043쪽 참조.

19) 위의 책, 1042-1043쪽.

○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예산 분리 편성은 장기적으로 해당 기금의 존립 필요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되고, 기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 특히, 기금은 「지방기금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운영해야 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이 기금 제도를 남용하면 예산 낭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해당 기금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법정 기금이지만, 그 취지와 목적을 살려 운용되어 예산 낭비적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BTL 사업예산을 특별회계와 기금에 분리하여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그 적정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억 5천 2백만원 중 7억 5천만원은 복합화 시설에 대한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전입금으로, 해당 재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제1호의 각호에²⁰⁾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처리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한 후 기금으로 전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4.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

가.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억 5천 1백만원임.

[표-12] 생태전환교육기금 내역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증감률
		소계	조성액(증가)	사용액(감소)		
2024	419,670	31,065	31,065	0	450,735	6.9

나. 검토의견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생태전환교육의 내실 있는 추진을 통해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인재를 양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21년도에 설치되었음.
- 2024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2백만원)보다 2천 9백만원이 늘어난 3천 1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액은 4억 5천 1백만원임.
- 동 기금은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자체수입의 수입계획액 1천 7백만원에서 3천 1백만원으로 80%(1천 4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결산 결과 수납액은 변동 없이 4억 5천 1백만원이고 결

손처분액 및 미수납액은 없었음.

- 당초 수입 계획액이 증액 수정된 것은 결산 결과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 조정과 2024년도 이자수입 변경에 따른 실제 이자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이에 대해 동 기금은 2024년도 기금 결산 결과 재무활동에 의한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변동이 없는 사유로 수정된 것으로, 의회의 의결 없이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기금 결산보고서의 적시²¹⁾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동 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폐지가 추진됨에 따라 기금에 근거한 예산집행이 중단되었고, 지난 2023년 10월 대법원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효력 정지 결정으로²²⁾ 기금 폐지를 수반하는 조례 폐지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별도 사업비 지출은 없고, 전액 예치금으로 지출처리하고 있음.

[표-13]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폐지 추진 개요²³⁾

일자	주요 내용
2023. 5. 30.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최유희 의원 발의, 의안번호 제806호)

21)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2) 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대법원 2023쿠10, 2023.10.17.) 관련

23) 변동 내역이 없어 2023회계연도 생태전환기금 결산 승인안 내용 중 표 재인용

일자	주요 내용
2023. 6.	소관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회부 및 입법예고 진행
2023. 7. 3.	조례안 상임위원회 심사·의결
2023. 7. 5.	조례안 본회의 심사·의결
2023. 7. 6.	조례안 집행기관 이송 (시의회 → 교육청)
2023. 7. 26.	조례안 재의 요구 (교육청 → 시의회)
2023. 9. 15.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재의결
2023. 9. 18.	확정조례 이송 (시의회 → 교육청)
2023. 9. 27.	폐지조례 의장 공포
2023. 10. 4.	서울시교육청, 대법원에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 제기 (재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포함)
2023. 10. 17.	대법원 폐지조례안 재의결 효력정지 결정

2) 수입결산

○ 2024회계연도 생태전환교육기금의 수입액은 3천 1백만원으로, 당초 수입계획액 1천 7백만원에 비해 1천 4백만원 증가했음.

- 동 기금은 2023년부터 운용하지 않으므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없고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 금액만 있으나, 해당 수입액을 구성하는 이자수입은 동 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에²⁴⁾ 따른 수익금에 해당하여 결산상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4 회계연도에 발생한 이자 수입이 전년도 말 현재액 4억 2천만원 대비 6.9% 수준인 3천 1백만원에 달해 2023회계연도 발생 이자수준(0.5%)보다 이자수입이 높게 형성되었음.

- 이는 서울시교육청 금고은행(NH농협은행)이 정한 예금상품별 수신금리²⁵⁾ 보다 높은 수준의 수익률로, 동 기금 예치로 인한 이자수입이

24)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크게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2025~2029년 「중기서울교육재정계획」에 의한 ‘중기 기금 정비 계획’에 따르면 동 기금은 2023년부터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교육 비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조례 폐지 절차 등에 따라 기금의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즉 동 기금은 2026년 7월 21일을 존속기한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 기간이 도과하게 되면 동 기금은 일반재원으로 그 목적이 달성 가능하므로 폐지될 것임.
- 현재 생태전환교육기금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의 결과가 확정 결정되기 전까지는 운용할 수 없으므로 현재 기금 예치에 의한 이자수입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결정될 대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동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6년 7월 21일의 도과로 기금 폐지 후 재원의 활용 계획을 미리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3) 지출결산

- 2024회계연도 생태전환교육기금 지출액은 총 4억 5천만원으로, 전액 예치금으로 구성되어 활용될 예정임. 그러나 해당 기금에 대해서 현재 사실상 기금을 운용하지 않고 있어 예치금은 예금 이자만 계속 발생할 것임.

25) 서울시의회 요구자료(요구번호 2025-1131번), ‘금고은행(NH농협은행)의 예금상품별 수신금리 현황(2023.10. ~ 2024.12.)’ (제출일 2024.5.30.) - 비공개자료

5.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가.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574억 4천만원임.

[표-14]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내역

(단위 : 백만원)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2024연도	665,663	△308,223	21,777	330,000	357,440

나. 검토의견

1) 기금결산 총괄

-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법정기금으로서, 동 기금은 교육비특별회계 재정수입의 불안정성 등을 대비하여 서울시교육청 사업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에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음.
- 2024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이자수입 217억 7천 7백만, 예치금 회수 6,656억 6천 3백만원 등을 포함한 6,874억 4천만원이며, 기금의 지출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0억원 예치금 3,574억 4천만원을 포함한 6,874억 4천만원임.
- 한편 「지방기금법」 제11조26)에 의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

26)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기금

출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정책사업 지출액의 20% 이하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담보하고 있음.

- 이에 금번 이자수입 결산액(217억 7천 7백만원)은 당초 이자수입 계획액(344억 5백만원)²⁷⁾보다 126억 1천 8백만원 감소하여 정책사업지출액인 재무활동의 예치금(3,574억 4천만원)이 당초 금액(3,700억 5천 8백만원)보다 126억 1천 8백만원 감소됨. 이는 당초 정책사업 지출계획 대비 △3.4% 감액에 불과한 것인바, 기금 결산 보고서의 적시만으로 변경가능한 것이므로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표-15] 2024년도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수입·지출 계획 변동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증감액 (③=②-①)	비율 (④=③/①)
		당초(①)	수정(②)		
수입	소계	700,058	687,440	12,618	1.8%
	이자수입	34,405	21,777	12,618	3.67%
	예치금회수	665,653	665,663	△10	0.0%
지출	소계	700,058	687,440	12,618	1.8%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000	330,000	0	0.0%
	예치금	370,058	357,440	12,618	3.4%

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7) 서울시교육청은 동 기금을 3차례 변경하였고, 1차 변경의 이자수입은 257억 2천 4백만원, 2차 변경의 이자수입은 5억 5천 3백만원, 3차 변경의 이자수입은 5억 6천 3백만원임.

2) 수입 결산

- 2024회계연도 동 기금의 수입액은 6,874억 4천만원이며 이는 수입 계획액과 동일함. 동 기금 수입의 수납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의 수입계획과 수납액이 동일하여 결산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이자수입(217억 7천 7백만원)은 2023년 결산액(5억 6천 3백만원) 대비 3,768%(212억 1천 4백만원) 증대되었는바, 이는 서울 시교육청이 2023년에 만기된 정기예금(6,656억 5천 3백만원)을 2024년에 해지하면서 발생한 것임.
 - 동 기금의 정기예금(6,656억 5천 3백만원)은 3개 계좌로 관리되었으며, 첫 번째 계좌는 예치액 4,650억 9천 2백만원에 적용 이율이 3.67%, 두 번째 계좌는 예치액 2,005억 5천 3백만원에 적용 이율이 3.30%, 세 번째 계좌는 예치액 8백만원에 적용 이율이 3.62%가 적용되었음.
 - 금고 약정에 따라 동 기금의 이자는 만기경과 후 해지시까지 적용금리가 100% 적용되며 해지시 적용 금리는 계좌 개설일 당시 금리가 적용되는바,

지출이 필요하여 계좌를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금을 재예치할 경우에는 만기일 당시 금리가 계좌개설 당시 금리보다 낮을 시.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기금 운용의 이자 수입 측면에서는 이익인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3개 계좌의 개설 및 만기 당시 금리를 살펴보면, 3개 계좌 모두 개설 기준 금리가 만기일 당시 금리보다 높거나 같은 수준이며, 이후 금고의 수신 금리가 가장 높았던 시기인 2024년 1~2

월에 계좌를 해지하여 이자 수입이 발생된 것으로([표-14] 참조),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적절한 이자 수입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됨.

[표-16]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자금 예치 현황²⁸⁾

(단위 : 천원, %)

예금종류	계좌종류	개설일자	개설당시이율	예치액	만기일	만기당시이율	해지일	해지당시이율	해지액	해지액 중 이자액
정기예금	1	2022.12.21	3.67	465,092,252	2023.3.21	3.57	2024.2.5	3.67	484,312,285	19,220,033
	2	2022.12.26	3.67	7,595	2023.3.21	3.57	2024.1.4	3.67	7,876	282
	3	2023.8.16	3.30	200,553,315	2023.9.16	3.30	2024.1.4	3.67	203,109,958	2,556,643

- 다만, 금고 약정에 따라 정기예금의 금리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연도말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액 이외 모든 예치액에 대해 예치 기간을 3개월로 지정하고 있음.
- 그러나 예치 기간이 길수록 적용 금리는 높아지는바,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기금 운용계획 및 경기 변동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기금 계좌별 적절한 예치 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3) 지출 결산

- 동 기금의 지출액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0억원 예치금 3,574억 4천만원을 포함한 6,874억 4천만원임.
-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3,300억원은 2024년도에 보통교부금 등 이 전수입의 감소로 인한 세입예산이 감소됨에 따라 교육 재정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지출된 것임.

28) 서울특별시교육청 2024년회계연도 기금 결산 요구자료 및 2022년~20224년 금고운용 보고 자료 재구성.

- 이와 관련하여 해당 기금의 사용 조건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살펴보면,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할 경우 적립금 총액의 50%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²⁹⁾되어 있음.
-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출액은 과거 3년 평균 세입금액이 본예산안 세입규모보다 적어 사용 요건이 충족되는바([표-16] 참조), 전출금 지출과 관련하여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표-17]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 세입 자원 검토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3년 평균(A)	2024**(B)	(B-A)
세입 결산액	12,202,397	14,738,178	12,813,617	13,251,397	10,830,536	△2,420,861

* 2023년 세입액: 2024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의 2023년도 세입 전망액

** 2024년 세입액: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세입예산액 기준, 단, 기금전입금 3,300억원 제외

- 다만 동 조례의 세입 자원과 관련된 기금 사용 요건은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으나, 세입 금액이 본예산 기준 인지 결산 기준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의 ‘과거 3년 평균 세입 금액’을 결산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2023년도 세입 결산액은 결산액이

29)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자원과 용도) ①~② (생략)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해당 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이 과거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해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

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결산액이 아닌 추정치를 반영하였는바,

실제 2023년도 결산액을 반영하고, ‘해당연도(202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재원’도 결산액으로 비교하였을 때, ‘과거 3년 평균 세입재원(13조 4,183억 6천 4백만원)’은 예측치 평균(13조 2,513억 9천 7백만원)보다 1,669억 6천 7백만원 높게 나타남.

- 또한 ‘해당연도(2024년도) 세입 재원’은 결산액(13조 87억 5천 8백만원)으로 비교하였을 때, 본예산(10조 8,305억 3천 5백만원)보다 2조 1,782억 2천 2백만원 높게 나타남바,

실제 ‘과거 3년 평균 세입금액(13조 4,183억 6천 4백만원)’과 ‘해당연도(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재원(12조 6,787억 5천 8백만원)’의 차이는 7,396억 6백만원에 불과함. 이는 동 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 ‘과거 3년 평균 세입금액’ 대비 ‘해당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의 감소분(2조 4,208억 6천 1백만원)의 30.6%임.

[표-18] 결산자료에 따른 세입 재원 검토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3년 평균(A)	2024**(B)	(B-A)
세입 결산액	12,202,397	14,738,178	13,314,516	13,418,364	12,678,758	△739,606

* 2023년 세입액: 결산액 기준

** 2024년 세입액: 결산액 기준, 단, 기금전입금 3,300억원 제외

- 이와 같이 ‘과거 3년 평균 세입 금액’ 및 ‘해당연도(2024년도) 세입 재원’을 모두 최종 예산인 결산액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보다 해당연도 세입 보전의 필요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해당연도 세입재원’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교육청의 세입 구조상 본예산 편성 당시보다 결산을 반영한 세입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등 현재 동 조례의 사용 기준은 기금 지출을 위해 예산안의 세입 규모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례’의 세입 보전에 대한 조건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동 기금 설치·운용의 법적 기반인 해당 조례의 지출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6.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가. 주요내용

-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19] 기금 내역

(단위 : 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가)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마)=(가)+(나)
		소 계 (나)=(다)-(라)	조성액 (다)	사용액 (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3,532,140,877	△10,623,727	11,997,884,382	12,008,508,109	3,521,517,150

나. 검토의견

1) 기금결산 총괄

-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52조³⁰⁾(이하 ‘학교안전법’)에 따라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 등을 충당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같은 법 제54조³¹⁾에 따라 교육감이 설치하고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용하는 기금임.

○ 2024회계연도 기금의 조성액은 전년도 기금 조성액(35억 3천 2백만원)보다 1천만원 감소한 35억 2천 2백만원이며 당해연도 기금의 수입과 지출의 결산액은 각각 155억 3천만원임.

○ 동 기금은 당초 운용계획 대비 수입 및 지출계획액이 148억 3천 2백만원에서 155억 4천 8백만원으로 4.8%(7억 1천 6백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1차 수정 당시 지출계획의 정책사업 중 재무활동이 13억 7백만원에서 15억 6천 8백만원으로 19.97%(2억 6천 1백만원) 증가하였음.

이는 2023년도 기금 결산 등에 따른 사유로 수정된 것으로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 결산보고서의 적시³²⁾만으로 변경이 가능한 것(「지방기금법」 제11조³³⁾)이므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 사업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로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3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공제회*가 관리·운용한다.

* 공제회 : 같은 법 제15조(학교안전공제회의 설립등) ① 교육감은 학교안전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시·도에 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32)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결산서 423쪽 참고

○ 변경 일자: (1차) 2024. 8. 9., (2차) 2024. 10. 21., (3차) 2024. 12. 11.

○ 변경의 필요성(사유)

- (1차) 2023년도 결산 결과에 따른 예치금 금액 변경, 장해급여 지급 건수 및 금액 증가

- (2차) 주민세 등 제세 부족으로 인한 사업 내 금액 변경,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인한 파견보조비 반영

- (3차) 예금이자 등 추가 발생

○ 변경 요지

- (1차) 예치금 증액(260,973천원), 공제사업비 증액(420,000천원)

- (2차) 기관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 내 금액 조정(전화, 인터넷 통신요금 △120천원,

주민세 등 제세 120천원), 수당 내 금액 조정(육아휴직수당 △2,300천원, 파견보조비 2,300천원)

- (3차) 공제급여 증액(34,378천원)

[표-20] 공제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수 입					지 출				
항 목	계획	결산	증감액	증감 비율	항 목	계획	결산	증감액	증감 비율
합 계	15,548	15,530	△18	△0.1	합 계	15,548	15,530	△18	△0.1
기타지원금	2,614	2,614	0	0.0	비용자성 사업비	12,154	10,806	△1,348	△11.1
기부금	0	0	0	-	용자성 사업비	0	0	0	-
용자금회수	0	0	0	-	인력운영비	1,557	1,003	△554	△35.6
예치금회수	3,532	3,532	0	0.0	기본경비	269	199	△70	△26.0
이자수입	171	145	△26	△15.2	예치금	1,568	3,522	1,954	124.6
기타수입 (공제료, 전입금 등)	9,231	9,239	8	0.1	기타	0	0	0	-

※ 기타수입: 공제료수입, 교육활동참여자 공제료, 소방안전사업 전입금, 여행자동행공제사업 전입금, 교원 보호공제사업 전입금, 학교폭력피해구상금회수, 법인세환급금, 잡수입

※ 비용자성사업비: 공제사업비, 예방사업비, 학교안전사고피해자상담지원비, 학교폭력피해지원비

2) 수입결산

- 2024년도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수납액(수입결산액)은 155억 3천만원으로, 수입계획(155억 4천 8백만원) 대비 1천 8백만원 (0.1%) 증가하였으며, 이는 기타지원금 26억 1천 4백만원, 예치금회수 35억 3천 2백만원과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93억 8천 4백만원으로 구성됨.

33)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2. 「재해구호법」 제14조에 따른 재해구호기금

③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우선 기타지원금은 공제기금 고갈에 따른 공제급여 부족분을 「학교안전법」 제3조³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보조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 및 동 기금운용계획안에 5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26억 1천 4백만원으로 감액편성되었고 전액 수납됨.
- 당해연도 기금 조성액 중 공제료 수입은 수입계획(82억 4천 8백만원) 대비 2억 2천 8백만원(2.8%) 증가한 84억 7천 6백만원이고, 이자수입은 수입계획(1억 4천 7백만원) 대비 2백만원(△1.4%) 감소한 1억 4천 5백만원임.

또한 공제료 수입을 제외한 기타 수입은 수입계획(5억 1천 3백만원) 대비 2억 5천만원(48.7%) 증가한 7억 6천 3백만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자공제료 5천 1백만원, 소방안전점검사업 전입금 2억원, 여행자동행공자세업 전입금 6천 5백만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전입금 1억 3천 3백만원, 학교폭력구상금회수 2억 5천 5백만원, 법인세환급금 4천 4백만원 및 잡수입 1천 5백만원 등으로 구성됨.

[표-21] 기금 수입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계획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2023년도 수입액
합 계	14,832	15,548	15,530	15,530	99.9	15,799
기타지원금	2,614	2,614	2,614	2,614	100	0
예치금회수	3,310	3,532	3,532	3,532	100	7,312
이자수입	147	171	145	145	84.8	244
소 계	8,761	9,231	9,239	9,239	100.1	8,243

34) 제3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이 법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입 계획액	수입계획 현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수납률(%)	2023년도 수입액
기타 수입	소 계	8,248	8,476	8,476	8,476	100	7,560
	공제료 수입	유치원	211	237	237	100	197
		초등학교	1,876	1,886	1,886	100	2,041
		중학교	2,419	2,442	2,442	100	2,051
		고등학교	3,664	3,677	3,677	100	3,070
		특수학교	33	51	51	100	44
		기타학교	21	158	158	100	136
		배움터지킴이	24	25	25	100	21
	소 계	513	755	763	763	101.1	683
	교육활동참여자공제료		17	51	51	100	16
	소방안전점검사업 전입금		200	200	200	100	500
	여행자동행공제사업 전입금		0	65	65	100	0
	교원보호공제사업 전입금		0	133	133	100	0
	학교폭력구상금회수		275	246	255	103.7	123
	법인세환급금		20	45	44	97.8	44
	잡수입		1	15	15	100	0

□ 기타수입(공제료 수입)

○ 2024년도 공제료 수납액은 학생 1인당 기준 공제료 단가³⁵⁾ 상승 및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배움터지킴이의 실제 가입 인원수 오차로 수입계획(82억 4천 8백만원) 대비 2억 2천 8백만원(2.8%) 증가한 84억 7천 6백만원임.

- 이와 같은 오차는 수입계획 수립 당시 가입 인원수 추계의 오류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난 3년간(2022년~2024년) 공제료 가입 인원수 추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의 경우 실제 가입 인원수(895,077명)가 수입계획 당시 인원수(906,551명)보다 11,474명 적었고,

35) 학생 1인당 공제료

(단위 : 원)

회계연도	유	초	중	고	평균
2024	3,960	5,170	12,430	17,710	9,818
2023	3,200	5,350	10,300	14,440	8,323
2022	2,940	4,510	9,550	12,700	7,425

2023년에는 실제 가입 인원수(871,773명)가 수립계획 당시 인원수(856,167명)보다 15,606명 많았으며, 2024년에는 실제 가입 인원수(846,827)가 수립계획 당시 인원수(825,045명)보다 21,782명 많았음.

즉,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전체 가입인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계획 인원과 가입 인원의 오차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그 중 가장 큰 추계 오차를 발생시키는 것은 기타학교로, 2022년 기타학교의 경우 실제 가입 인원수(11,531명)는 수입 계획 당시 인원수(8,740명) 대비 31.9%(2,791명) 많았고, 2023년에는 실제 가입 인원수(10,782명)가 수입 계획 당시 인원수(3,546명) 대비 204.1%(7,236명), 2024년에는 기타학교의 실제 가입 인원수(12,170명)가 수입 계획 당시 인원수(2,393명) 대비 408.6%(9,777명) 증가되었음.

[표-22] 공제 가입 인원수 산출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2024년			2023년			2022년		
	계획(A)	결산(B)	증감 (B-A)	계획(A)	결산(B)	증감 (B-A)	계획(A)	결산(B)	증감 (B-A)
	예측 인원수	가입 인원수		예측 인원수	가입 인원수		예측 인원수	가입 인원수	
계	825,045	846,827	21,782	856,167	871,773	15,606	906,551	895,077	△11,474
유치원	53,193	59,823	6,630	61,618	61,707	89	67,983	65,461	△2,522
초등학교	362,895	364,891	1,996	387,019	381,507	△5,512	399,042	392,911	△6,131
중학교	194,581	196,448	1,867	204,471	199,167	△5,304	210,575	205,686	△4,889
고등학교	206,909	207,596	687	197,057	212,587	15,530	217,770	213,460	△4,310
특수학교	3,710	4,515	805	984	4,558	3,574	993	4,549	3,556
기타학교	2,393	12,170	9,777	3,546	10,782	7,236	8,740	11,531	2,791
배움터지킴이	1,364	1,384	20	1,472	1,465	△7	1,448	1,479	31

- 이와 관련하여 공제회는 2023년까지는 최근 3년간 학생 증감 평균
으로 공제 가입인원을 추계했으며, 2024년 이후는 중기서울교육재정
계획의 학생수를 근거로 인원수를 산출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기타학교 가입 인원의 추계상 오차는 2023년 기금 결산 시에
도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도 역시 오차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전년 대비 확대됨. 이는 공제회의 가입인원 산출 기준이 실제
교육 현장의 실태와는 다소 괴리가 있음을 시사함.
- 따라서 공제회는 결산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반복적인 예측 오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중기계획 기반 예측 외에도 최근 수년간의
실제 변화 추세를 반영한 보완 방안을 도입하는 등 예측 체계를 전반
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기타수입(전입금)

- 기타수입 중 수익·공제사업에서의 전입금은 총 3억 9천 8백만원으
로, 소방안전점검사업에서 2억원, 여행자동행공제사업에서 6천 5백
만원,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1억 3천 3백만원이 각각 발생함.
- 우선 소방안전점검사업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4년 수입은 29
억 2천 6백만원으로 2023년(28억 5천 9백만원) 대비 2.3%(6천
7백만원) 증가하였으나, 2024년 기금으로의 전출금은 2억원으로 2
023년(5억원) 대비 60%(△3억원) 감액됨.
- 이에 대해 공제회는 2023년의 경우 공제기금 부족으로 과거 누적수
익금을 일괄 전출하여 일시적으로 전입금을 대폭 증액했으나, 2024
년은 평시 기준인 전체 수입의 10% 수준을 전입하도록 감액했다고
밝힘.

- 하지만 소방수익사업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제회는 수익금 중 일부만을 기금으로 전출하고, 상당 금액은 차기이월금으로 누적하고 있는바, 현재의 운영방식은 동 수익사업의 취지를 퇴색시키며, 기금 본래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정 운용으로 사료됨.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수익사업을 통해 창출된 수입이 기금으로 전출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제료 지급 등 동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표-23] 소방수익사업 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항 목		2024년도	2023년도
수입	수수료		2,225	2,032
	이자수입		15	11
	기타수입		0	0
	전기이월금		686	816
	합계		2,926	2,859
지출	사업비	인건비	1,199	1,203
		운영비	455	470
	전출금		200	500
	차기이월금		1,071	686
	합계		2,926	2,859

- 한편 여행자동행공제사업의 2024년 수입은 5억 9천 2백만원으로 2023년(4억 2천만원) 대비 19.1%(7천 2백만원) 증가하였고, 해당 사업에서의 기금 전출은 2024년에 처음으로 발생하여 총 6천 5백만 원이 전출됨.

동 사업은 2024년 3월부터 보험사 위탁 운영에서 직접 운영으로 전환되면서, 수익금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전출한 것임.

- 수익사업 다변화는 학교안전공제의 공제수입 부족에 따른 예치금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대안으로, 동 기금에서의 전출금 확대는 기금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청의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임.
- 그러나 소방안전점검사업과 여행자동행공제사업 모두 전년 대비 차기이월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바³⁶⁾, 기금 감소로 교육청에서 지원금을 매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출 규모가 걱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음.

전출금 규모는 기금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익·공제사업이 지속가능하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이에 따라 공제회는 수익사업의 실적과 기금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명확한 전출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의 수입 기반 확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24] 여행자동행공제사업 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2024년도	2023년도
수입	공제료	448	376
	이자수입	3	0
	기타수입	0	0
	전기이월금	141	44
	합계	592	420
지출	인건비	37	0
	사업비	53	277
	운영비	44	2
	전출금	65	0
	차기이월금	393	141
	합계	592	420

36) 수익·공제사업 전년대비 차기이월금 비교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4	2023	증감액	증감률
소방수익사업	1071	686	385	56.1%
여행자동행공제사업	393	141	252	178.7%

○ 참고로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도 전출금 1억 3천 3백만원이 발생했으나, 이는 2024년 2월 해당 사업의 운영방식이 수익사업에서 목적사업으로 전환³⁷⁾됨에 따라 2020~2024년 사업 시행기간 동안 누적된 정산금을 기금회계로 일괄 전입하여 발생한 것임.

2025년 이후 사업비 집행잔액은 서울시교육청에 반납되어 기금 전출금이 발생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본 전출금은 기금의 일시적인 수입 증가 요소로 보아야 할 것임.

[표-25] 교원보호공제사업 결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2024년도	2023년도
수입	공제료	1,312	120
	이자수입	8	3
	기타수입	1	0
	전기이월금	152	170
	합계	1,473	293
지출	인건비	140	0
	사업비	874	140
	운영비	65	2
	전출금	133	0
	차기이월금	261	151
	합계	1,473	293

37)「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 3. 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제22조(교원보호공제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이하 “교원보호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② 교원보호공제사업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교원의 교육활동으로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지원 및 구상권 행사 지원(교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발생한 상해·상담·심리치료 비용 지원 및 교원이 위협을 받는 경우 보호 서비스 지원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법률적 분쟁에 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소송비용의 지원
 ③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출결산

- 동 기금의 지출액은 지출계획현액(155억 4천 8백만원) 대비 1천 8백만원($\triangle 0.1\%$) 감액된 155억 3천만원임.
-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차기이월금) 35억 2천 2백만원을 제외한 2024년도 지출액은 120억 8백만원으로, 공제사업비 104억 6백만원, 예방사업비 1억 3천 7백만원,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비 1천 8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비 2억 4천 5백만원, 인건비 10억 3백만원, 업무추진비 2천 4백만원, 운영비 1억 7천 5백만원 등임.

[표-26] 기금 지출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과목			지출 계획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이월액	2023년도 결산액
합계			14,832	15,548	15,530	99.9	0	15,799
비용 자 성 사 업 비	공 제 사 업 비	소계	10,953	11,408	10,406	91.2	0	10,172
		공제급여 지급	10,570	11,005	10,116	91.9	0	9,817
		심사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위탁	34	34	20	58.8	0	20
		보상심사 위원회	17	17	9	52.9	0	9
		소송업무	227	247	188	76.1	0	213
		손해방지 및 긴급 조치 비용 지원	26	26	0	0.0	0	0
		학교안전사고보상시스템 의 운영 개선 및 안정화	19	19	14	73.7	0	53
		중앙회 분담금	60	60	59	98.3	0	60
		예방사업비	190	190	137	72.1	0	116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지원비		30	30	18	60.0	0	11
	학교폭력피해 지원비		526	526	245	46.6	0	311
	인 력 운 영 비	인 건 비	보수(월급여)	1,221	1,221	752	61.6	0
수당			230	230	171	74.3	0	179
4대보험			106	106	80	75.5	0	81
기 본 경 비	업무추진비		24	24	24	100.0	0	23
	운영비		245	245	175	71.4	0	184
예치금(차기이월금)			1,307	1,568	3,522	224.6	0	3,532

□ 공제사업비(공제급여)

- 공제사업비 중 공제급여는 교육활동 중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 및 관련 비용을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계획현액(110억 5백만원) 대비 91.9%인 101억 1천 6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이는 2023년(98억 1천 7백만원)에 비해서는 2억 9천 9백만원(3.0%)이 증가한 것임.
- 공제급여의 총 지급건수는 21,917건으로 전년도 지급건수(20,006건) 대비 9.6%(1,911건)가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은 101억 1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98억 1천 7백만원) 대비 3.0%(2억 9천 9백만원)가 증가하였음.
- 이 중 요양급여의 지급건수는 21,892건으로 전년도 지급건수(19,969) 대비 9.6%(1,923건) 증가하였고, 지출액은 79억 3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65억 4백만원) 대비 22.0%(14억 3천 3백만원) 증가하였음.
- 이에 비해 장해급여의 경우 지급건수는 22건으로 전년도 지급건수(36건) 대비 38.9%(△14건)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16억 4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27억 1천 9백만원) 대비 39.4%(△10억 7천만원) 감소하였음.
- 한편 유족급여는 3건으로 전년(1건)대비 건수는 증가했으나, 지출액은 5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지출액(5억 9천 4백만원) 대비 10.8%(△6천4백만원) 감소하였고, 간병급여와 위로금 지출은 발생하지 않았음.
- 전반적으로, 요양급여의 지출액 증가를 장해급여·유족급여의 지출액 감소가 상쇄하여 전체 공제급여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해석됨.

- 이와 관련, 공제회는 장해급여의 감소 사유를 교육부고시인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마련에 따른 장해급여 지급 기준 강화로 지급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동 고시는 2021년 제정되었는데, 장해등급 판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3년 걸려 2024년 지급분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임.

결과적으로 2024년 공제급여 지급 증가가 전년 대비 완만하게 이루어지면서, 기금의 급격한 소진을 일정 부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표-27] 공제급여 종류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분	2024		2023		증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1,917	10,116	20,006	9,817	1,911	299
요양급여	21,892	7,937	19,969	6,504	1,923	1,433
장해급여	22	1,649	36	2,719	△14	△1,070
간병급여	0	0	0	0	0	0
유족급여	3	530	1	594	2	△64
기타	0	0	0	0	0	0

- 그러나 장해급여의 경우 지출계획현액 23억 8천 1백만원 대비 16억 4천 9백만원이 수납되어 7억 3천 2백만원(31.7%)의 집행잔액이 발생함.
- 당초 계획상 장해급여 지급액은 2023년(27억 1천 9백만원) 대비 56.2% 감소한 11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2024.8.9.)³⁸⁾시 급여 지급 증가를 사유로 16억 4천 9백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당초 예측보다 저조하게 이루어졌으

38) 2024회계연도 제1차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기금 운용 변경(2024. 8. 9.)

며, 이는 장해등급 판정 기준의 개정과는 별개로 공제회 내부의 추계가 충분히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됨.

- 개정된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³⁹⁾이 2025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향후에는 판정기준의 변동에 따른 장해급여 증감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결산 예측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표-28] 공제사업비 지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과 목		지출 계획액	지출 계획현액	지출액	지출 비율(%)	지출액 증감	2023년 결산액
합계		10,953	11,408	10,406	91.2	△1002	10,172
공제급여	소 계	10,570	11,005	10,116	91.9	△889	9,817
	요양급여	8,694	7,938	7,937	100.0	△1	6,504
	장해급여	1,190	2,381	1,649	69.3	△732	2,719
	간병급여	16	16	0	0.0	△16	0
	유족급여	630	630	530	84.1	△100	594
	위로금	40	40	0	0.0	△40	0
보상심사 위원회	소 계	17	17	9	52.9	△8	9
	운영비	15	15	9	60.0	△6	9
	업무추진비	2	2	0	0.0	△2	0
소송업무	소 계	227	247	188	76.1	△59	212
	소송선임료 등	227	247	188	76.1	△59	212
손해방지및긴급 조치 비용	소 계	26	26	0	0.0	△26	0
	보전금	9	9	0	0.0	△9	0
	운영비	17	17	0	0.0	△17	0
전문가 위탁	운영비	34	34	20	58.8	△14	21
판결금 지원 (없음)	보전금	0	0	0		0	0
시스템의 운영 개선 및 안정화	운영비	19	19	14	73.7	△5	53
중앙회 분담금	운영비	60	60	59	98.3	△1	60

39) 「학교안전법 상 장해등급 판정 세부기준」 제3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에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예치금(차기이월금)

○ 기금운용계획상 예치금은 15억 6천 8백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결산 기준으로는 35억 2천 2백만원으로 19억 5천 4백만원(124.6%) 증가하였음.

- 이는 비융자성사업비와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했기 때문으로, 특히 공제급여(8억 8천 9백만원), 학교폭력피해지원비(2억 8천 1백만원), 인건비(5억 5천 4백만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함.

○ 한편 동 기금 조성액은 2021년말 84억 7천 2백만원 대비 2022년말에 73억 1천 1백만원으로 11억 6천 1백만원(△13.7%)이 감소하였고, 2023년말에 35억 3천 2백만원으로 지난년도 보다 37억 7천 9백만원(△51.7%)이 감소하는 등 2년 연속 크게 감소함.

이에 기금 고갈 우려로 2024년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26억 1천 4백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 있음.

[표-29] 최근 5년간 공제기금 조성액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전년도말 조성액(A)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E=A+B)	전년대비 증감
		계(B=C-D)	조성액(C)	사용액(D)		
2024	3,532	△10	11,998	12,008	3,522	△10
2023	7,311	△3,779	8,488	12,267	3,532	△3,779
2022	8,472	△1,161	7,355	8,516	7,311	△1,161
2021	8,062	410	7,071	6,661	8,472	410
2020	7,019	1,043	7,265	6,222	8,062	

○ 2024년 결산 기준 예치금은 35억 2천 2백만원으로, 2023년 대비 1천만원(△0.1%)이 감소하는 것에 그쳐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됨.

- 그러나 2025년 기금운용계획은 2024년 결산 전 확정되는바, 추계 오차가 클 경우 재정운영의 왜곡을 초래하며 적절한 지원금 규모 산정 또한 어려워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함.
 - 실제로 2025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당시에는 예치금을 15억 6천 8백만원으로 추정하여 교육비특별회계 지원금을 32억 7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결산 결과 실제 예치금은 35억 2천 2백만원으로 나타나면서 필요한 최소 금액보다 과다하게 지원금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이처럼 정확한 예치금 추계는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 요소인바, 사업별 집행률을 면밀히 관리하여 계획과 결산 간의 차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